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0
----------	-----

2014년 12월 17일
운영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11. 28. 김진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14. 12. 2.

다. 상정일자 :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의결(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진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활동의 추진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고, 연간 공무국외 활동 기본계획을 사전에 공고토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외부 공모위원을 포함한 9명의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재난사태 또는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될 경우 해제될 때까지 국외 활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8조).
- 국외활동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함(안 제11조).
- 여행사 등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이하 “예규”)에 따라 운영되어 온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기본원칙과 방향, 각종 절차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다 내실있는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2 공무국외활동의 적용범위(안 제2조)

- 안 제2조 제1항은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를 기존 예규¹⁾보다 확대 적용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그 적용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원의 모든 공무국외활동에 대해 제정안에서 정한 엄격한 심의와 국외활동 전 과정의 공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5. 기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 안 제2조 제2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공무국외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원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매년 4~5개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과정에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 된 의원들을 위해 별도의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설된 것으로 해석됨.

3 공무국외활동의 기본원칙(안 제3조)

- 안 제3조는 공무국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i)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에 기여, ii) 목적외 공무국외활동 금지, iii)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금지, iv) 공무국외활동 수행기간 및 경비 사용의 적정화, v) 의원간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의 형평성 보장, vi)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의원간 공무국외활동의 기회 균등과 형평성을 보장해 해외 자매도시 방문 등에 있어 의원간 불평등을 해소하고²⁾, 공무국외활동의 계획 및 실시, 결과 등 전 과정을 의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내실있는 공무국외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4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수립 및 허가절차(안 제4조 및 제5조)

2) 일례로, 제8대 의회 기간 중 해외자매도시 의원별 방문횟수를 보면, 5회 2명, 4회 4명, 3회 10명, 2회 33명, 1회 42명임. 그러나 단 한번도 참여하지 못한 의원이 무려 23명이나 되는 등 의원간 과도한 편차와 불평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의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연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을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안 제4조),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 공무국외활동 계획의 사전공개는 의회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시민들의 신뢰와 관심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5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공모위원 선정(안 제6조~제7조)

-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 2명, 전문가 3명, 시민단체 추천 2명, 그리고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시민 2명 등 총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음.
- 이는 공무국외활동 허가 여부를 의회 내부인사보다는 시민을 포함한 외부인사가 그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토록 하고,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서울시민 2명 공모시에 적격자 선정기준 논란, 탈락자 반발, 과다인원 신청시 처리 절차 부재 등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심사위원회 회의(안 제9조)

-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동일 의안에 대해 2회 이상 유회된 경우에 한해 서면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대면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면심사를 최소화하여 심사과정의 졸속처리 방지라는 장점도 있는 반면,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대면심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오히려 정당한 공무국외활동까지도 지연·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서면심사가 가능한 요건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7 공무국외출장 대행업체 등 선정방식(안 제12조)

- 제정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방식을 지양(止揚)하고,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전자공개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해 대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0
----------	-----------

제안년월일 : 2014년 12월 17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심사위원회는 의회 내부 사안에 대한 자율적인 심의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외부 공모절차를 통해 선발하는 시민 2명을 그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 공모위원(서울특별시민 2명)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공모위원 모집 및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제2호 중 ‘3명’은 4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2명’은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u>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u> (생략)</p> <p>1. (생략)</p> <p>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u>3명</u></p> <p>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u>2명</u></p> <p>4. 공모를 통해 선발된 서울특별시민 <u>2명</u></p> <p>② ~ ⑤ (생략)</p>	<p><u>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u>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u>4명</u></p> <p>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u>3명</u></p> <p>〈삭제〉</p> <p>② ~ ⑤ (원안과 같음)</p>
<p><u>제7조(공모위원 선정) ①</u> <u>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 공모위원은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u></p> <p>② <u>모집공고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해야 하며, 공모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u></p> <p>③ <u>공모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제〉</p>
<p><u>제8조(심사기준)</u> (생략)</p>	<p><u>제7조(심사기준)</u> (원안과 같음)</p>
<p><u>제9조(회의)</u> (생략)</p>	<p><u>제8조(회의)</u> (원안과 같음)</p>
<p><u>제10조(수당)</u> (생략)</p>	<p><u>제9조(수당)</u> (원안과 같음)</p>
<p><u>제11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u> (생략)</p>	<p><u>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u> (원안과 같음)</p>
<p><u>제12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u> (생략)</p>	<p><u>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u> (원안과 같음)</p>
<p><u>제13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u> (생략)</p>	<p><u>제12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u> (원안과 같음)</p>
<p><u>제14조(사후관리 등)</u> (생략)</p>	<p><u>제13조(사후관리 등)</u> (원안과 같음)</p>
<p><u>제15조(의원외교연맹)</u> (생략)</p>	<p><u>제14조(의원외교연맹)</u> (원안과 같음)</p>
<p><u>제16조(시행규칙)</u> (생략)</p>	<p><u>제15조(시행규칙)</u> (원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공무국외활동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의원은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국외연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활동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기준과 지급범위를 넘어서면 아니 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 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⑥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연도의 공무국외활동계획을 취합하여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조(허가절차)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활동 출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2. 의회 또는 국외교육연수 전문가 4명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명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2. 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3.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4.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5. 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6.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 정도

7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외활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회기 기간 중에 실시해야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포가 해제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외활동을 실시할 수 없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 또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설명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대행업체 등 선정 방식)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여행사 등 대행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활동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의원외교연맹) ① 의원은 외국 지방도시 의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외교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국외공무활동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